

3. 서울特別市鐘路區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

2003. 11. 3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2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11. 3)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)

가. 개정이유

○현행 조례 중 조례전문 명기사항이나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을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조례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“서울특별시장 승인”을 삭제함(안 제3조)

○규칙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“서울특별시장 승인”을 삭제함(안 제4조)

○공포방법 중 “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공포”를 “구보에의 게재”로 하고, 구의회의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단서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)

○공포일중 “게시한 날,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”을 “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”로 개정함(안 제8조제1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